

消費者倒産法 立法時の 檢討課題

1999. 12

研究者：尹榮信(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I. 序 論	5
II. 各國의 消費者倒産法의 構造	7
1. 프랑스	7
2. 獨 逸	7
3. 오스트리아	8
4. 英 國	9
5. 美 國	9
III. 清算型節次와 債務調整型節次의 共通문제	11
1. 夫婦共同節次	11
2. 債權者 權利行使 中止의 範圍 및 時期	12
(1) 擔保權의 實行	13
(2) 中止의 時期	13
(3) 中止의 範圍	14
IV. 清算型節次	17
1. 適用對象	17
2. 破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	17
3. 自由財產의 擴張	18
4. 免責節次	19
(1) 破産節次와 免責節次의 一體化	19
(2) 免責期間	21
(3) 免責의 要件	22
(4) 免責期間中의 監督	23
(5) 免責의 決定	24
(6) 非免責債權	25

5. 其 他	25
(1) 破産者에 대한 制裁	25
(2) 破産者에 대한 監守制度의 폐지	26
(3) 扶助料의 給與	26
 V. 債務調整型節次	27
1. 適用對象	27
2. 申請權者	27
3. 節次開始要件	28
4. 開始의 效果	29
5. 債務者の 재산에 대한 管理處分權 및 監督	30
6. 債權의 申告 · 調査 · 確定	31
7. 辨濟計劃	32
(1) 辨濟計劃의 提出時期	32
(2) 計劃의 提案과 同意 및 認可	33
(3) 辨濟計劃의 內容에 대한 制限	36
(4) 計劃期間	39
8. 辨濟計劃의 效力	39
(1) 免 責	39
(2) 效力의 範圍	41
(3) 計劃의 履行監督	42
(4) 辨濟計劃의 變更 및 取消	43
 VI. 結 論	45

I. 序論

消費者破産이란 법에서 엄격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활동에서 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의 비사업자가 그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맑는 파산절차를¹⁾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져 왔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消費者信用이 발달하여 개인이 신용을 얻은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 채무자의 지급불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행법상 소비자 채무자의 지급불능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도산처리절차로는 파산절차와 화의절차가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자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파산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청산할 재산이 없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破産廢止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파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개인과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파산법은 소비자파산을 규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화의절차도 원래 개인사업자 및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이용을 전제로 한 제도이니 만큼 비용이나 시간의 측면에서 소비자 채무자에게는 적절치 않다. 이처럼 기존의 절차는 소비자채무자의 도산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채무자의 지급불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이 높아져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으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각국에서 소비자도산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였고,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소비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개인채무자의 도산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법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채무자가 파산이나 화의절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파산법 제정 이후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가 1997년에 이르러서야 소비자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을 통하여 파산절

1) 소비자파산실무, 법원행정처, 1면.

I. 序論

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 이후 파산절차의 이용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이용실적은 극히 미미하다.²⁾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기존의 도산절차가 소비자채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도산을 모두 법적 절차에서 처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私的 整理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도산의 법적인 처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법의 불비에 있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도산절차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消費者倒産節次를 도입할 때 어떠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가를 제시하고, 각 논점별로 관련된 각국의 소비자도산법의 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도산법의 입법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비자도산법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게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파산 절차에 해당되는 소비자 채무자의 清算型節次와 화의절차에 대응될 수 있는 債務調整型節次를 두는 것을 상정하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도산신청시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가를 선택할 필요 없이 일단 소비자도산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채무자가 채무조정형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개시요건을 갖춘 이상 일단 채무조정형절차를 진행시키고 이것이 실패한 경우에는 정지되었던 청산형절차를 진행시키는 일원화된 도산절차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 시키기로 한다.³⁾

이하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각국의 소비자도산법의 전체구조에 대하여 살펴본 후, 소비자채무자 의 청산형절차와 채무조정형절차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논점과 각 절차의 구성에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하여 각각 검토한다.

2) 1998년 서울지방법원의 소비자파산사건 접수건수는 162건에 지나지 않는다(서경환, “서울지방법원의 소비자파산사건실무”, 인권과 정의 통권 271호 (1999.3)).

3) 소비자도산절차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상한 것에 대한 설명은 최성근·윤영신, 도산 절차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9-08 (1999) 제4장 제2절 참조.

II. 各國의 消費者倒産法의 構造

1.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과거에는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1989년 '個人 및 家計의 過多債務에 관한 困難의豫防 및 解決에 관한 1989년 12월 31일 법'(Loi n.89-1010)을 제정하였다(이하 1989년법이라고 약함).⁴⁾ 1989년 법에서는 소비자채무자의 도산처리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 의한 調停節次와 법원에 의한 裁判節次 두 가지를 규정하였다. 양절차 모두 채무조정에 관한 절차이고 양자간에 법규정상의 서열은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調停이 신청되고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裁判節次가 개시되는 二段階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산면책제도에 대하여는 법개정시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채택되지는 않았다.

2. 獨逸

독일에서도 1994년 10월에 제정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도산법(Insolvenzordnung)(이하 新倒産法이라고 약함) 제304조 이하에서 소비자도산에 관한 특칙을 두었다. 즉,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를 조정하는 債務調整計劃節次(Schuldenbereinigungsplan)를 신설하고 제311조 이하에서 파산절차를 간이·신속하게 정비한 簡易倒産節次(Vereinfachtes Insolvenzverfahren)를 규정하면서, 소비자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殘餘債務免責制度를 도입하였다. 신도산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하여 도산이 신청되면, 일단 채무자는 채무조정계획절차를 거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도산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채무조정계획절차 개시

4) 이 법은 199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프랑스법의 1989년법에 대한 설명은 山本和彦, “フランスにおける消費者倒産の處理と豫防”, 法學(東北大學法學會)第57卷 6號(1994)에 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93년 7월까지의 법규정 및 판례·학설의 동향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II. 各國의 消費者倒産法의 構造

신청 전에 裁判外의 和解노력이 前置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서 이 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채무조정계획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어 실패하면 정지되었던 도산절차가 속행되는데 이 경우에 소비자채무자는 간이도 산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 청산이 종료한 후에도 즉시 면책을 받을 수는 없고, 7년간 채무의 변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면책받을 수 있다.⁵⁾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1993년에 파산법의 제3부로서 '自然人에 관한 特則'이라는 제목하에 자연인의 파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법개정을 단행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채무자의 청산형절차와 채무조정형절차를 각각 하나씩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오스트리아 파산법에서는 다양한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잔여채무면책제도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소비자채무자는 裁判外 和議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재판의 화의가 실패한 경우에는 債務調整節次(Schuldenregulierungsverfahren)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절차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債務調整節次에서는 우선 強制和議(Zwangsausgleich)가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강제화의는 5년간 적어도 30% 이상의 변제율을 제시하는 화의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통상적인 강제화의와 유사하지만 변제율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제화의 절차가 실패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法院에 의한 辨濟計劃節次(Gerichtlicher Zahlungsplan)로 이행시킬 수 있다. 이 절차에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환가를 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5년 이상(최대 7년) 수입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변제액은 그

5) 독일의 신도산법에 대해서는 木川裕一郎, “ドイツにおける消費者倒産制度の改革”, 東海法學 第15號, 東海大學法學部 (1996); Reiner Kemper(澤田克己譯), ドイツにおける新消費者破産制度の成立—残債務の免責を中心として”, ジュリスト No. 1106 (1997. 2.15), 85면; 김경욱, “독일의 소비자파산과 잔여채무면책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505호(1998.10); 최성근, 독일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8-3 (1998) 참조.

기간동안 수입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안하는 변제 계획에 기하여 채무의 처리를 도모한다는 점은 강제화의와 유사하지만 최저변제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 청산을 하여야 하는 절차이면서도 청산 이후 변제를 법에서 정하여진 조건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행하는 절차를 하나 더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절차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免責節次(Abschöpfungsverfahren)에 의하여 도산이 처리되게된다. 이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수입 중 법에서 정하여진 부분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채무변제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⁶⁾

4. 英 國

영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절차와 별도로 개인에 대해서 任意的 個人債務調整節次(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와 個人破産節次(Individual Bankruptcy)를 병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는 개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채무조정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절차이다.⁷⁾

5. 美 國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청산 절차로서 7장절차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정기적수입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의 환가·배당을 거치지 않고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13장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6) 山本和彦, “オーストリアの消費者倒産法”, 現代金融取引法の諸相(米田實先生古稀記念), 民事法研究會(1996)

7) 영국법에 대해서는 Roger Gregory, Bankruptcy of Individuals (2d ed. 1992); 윤영신, 영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98-6 (1998) 참조.

III. 清算型節次와 債務調整型節次의 公통문제

1. 夫婦共同節次

우리 현행 파산법에서는 부부공동파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쌍방에게 파산원인이 있다면 각각 파산신청을 하여 쌍방의 절차를 병합함으로써 어느 정도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의 중지 및 면책절차의 효과를 부부에게 동시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고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경제적 단위로서 가정의 새출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미국 연방도산법 제302조(a)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joint case).⁸⁾ 여기서 융합이란 부부 쌍방의 자산과 부채를 합체하여 하나 풀을 만들고 여기서 쌍방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다.

부부공동신청제도는 財團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관재인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하는 절차의 병합(joint administration)⁹⁾보다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크다. 자산·부채비율이 높은 재단과 낮은 재단이 융합되면 전자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뜻이 적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재단의 융합이 아주 일상적으로 혀용되는 것은 아니다.¹⁰⁾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부부공동파산제도는 첫째, 절차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부부의 자산·부채를 분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의 신속성·경제성이

8) 공동신청이 제출되면 자동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융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부부의 재산이 융합되어야 할(consolidated)것인가 및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동조(b)항).

9) 부부공동절차는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아무리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의 병합(joint administration)을 이용할 수 있다(도산규칙 제1015조).

10) 그러나 법원이 융합의 가부 및 융합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규모, 공동채무의 액 등 관련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압류가능한 고가의 특유재산이 있거나 부부의 일방에게 大債權者가 없는 한 충분히 융합이 가능할 것이다(House Report, No. 95-595, 95th Cong., 1st Sess. 340 (1977) at 321 (宮川知法, “消費者倒産法制の創設”, ジュリスト No.1111 (1997.5.1-15), 50면의 각주 54에서 재인용).

III. 清算型節次와 債務調整型節次의 공통문제

높아지며 배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자동적 중지(automatic stay), 강제집행금지물건의 확보, 면책 등의 효과를 부부가 공동으로 향수할 수 있다. 공동의 절차이면서도 자유재산은 독립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제522조(m)) 가정보호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부부·가정의 경제적 붕괴를 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도산법에서와 같이 재단의 융합을 인정할 것인가는 夫婦別產制의 이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소비자신용의 증가에 따라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재단의 융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¹¹⁾

2. 債權者 權利行使 中止의 範圍 및 時期

현행 파산법 및 화의법에서는 절차개시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시키고 있다. 이는 절차개시 이전에 保全處分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담보채권은 別除權으로 규정하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담보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자유로이 인정하게되면 채무자의 경제생활의 재건이 곤란해지는 측면도 있다. 소비자채무자를 위한 절차에서도 이와 같은 별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국은 일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채무자에 관한 절차에서 별제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의 신청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채무자에 의한 절차 신청 자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중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동적 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두고 있다. 이처럼 도산절차의 목적상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언제부터 제한을 할 것인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11) 宮川知法, 債務者更生の法理論—債務者更生法構想·各論 I (1997), 48면.

또한 보전처분과 절차개시의 효과 양자 모두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위와 같은 법적 절차는 당연히 제한되지만, 이를 넘어서서 채무변제 행위를 강요하는 사실상의 권리행사까지도 중지시킬 것인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擔保權의 實行

현행 파산법과 화의법은 담보채권을 별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전처분 및 절차개시의 효과로서 담보권 행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비자도산절차를 새로이 입법함에 있어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는 7장절차이건 13장절차이건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자동적 중지의 효과로서 담보권 실행이 중지된다(제362조(a)(4)). 담보권 실행을 자유로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경제생활의 재건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 상당기간을 정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시킨다면 채무자와 담보권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中止의 時期

현행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권리행사중지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고, 신청시부터 절차개시결정 사이에 이러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保全處分이 필요하다. 소비자도산절차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취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같이 채무자의 절차개시신청 즉시 권리행사가 중지되도록 하는 자동적 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할 것인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7장절차이건 13장절차이건 절차신청 자체에 自動的 中止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절차의 중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영국의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에서 채무조정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임시명령(interim order)을 신청한다. 법원은 임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채무자가 제안하는 조정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시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채무자나 채무자

III. 清算型節次와 債務調整型節次의 공통문제

의 재산에 대하여 소송절차나 강제집행 또는 법적 절차를 개시 또는 계속해 나갈 수 없다(제252조1항). 독일에서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제21조). 자동적 중지의 문제는 소비자도산절차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3) 中止의 範圍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범위에 관해서는 ①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금지하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 ② 위와 같은 제한만으로는 채권자가 사실상 이행을 청구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우선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범위를 좀 더 인정하는 ①의 입장을 택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하에서는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또는 이미 신청되어 있는 강제집행절차의 일시정지를 면하는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고, 아직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파산법 또는 화의법상의 보전처분으로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다.¹²⁾ 미국 연방도산법에 의하면 도산절차 개시 전에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수 있었던 채무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기타 소송 또는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 또는 채권의 행사를 위한 소송 기타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은 중지되고(제362조(a)(1)), 도산절차개시 전에 이미 판결을 취득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제362조(a)(2))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같은 입장을 택하고 있는 예로서는 미국 연방도산법을 들 수 있다.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평가 또는 회수하는 행위도 중지되는데(제362조(a)(6)), 여기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와 접촉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¹³⁾ 소비자도산의 이념인 채무

12) 이진만, “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 파산법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1999) 참조.

13) 예를 들자면 등록금을 완불하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도산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대학에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낼 때까지 증명서

III. 清算型節次와 債務調整型節次의 共同문제

자의 개생에는 가정의 보호 및 직업의 보호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중지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⁴⁾

발급을 거부하였는바, 법원은 이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동적 중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In re Health*, 3 B.R. 351 (Bkrtcy.N.D.Ill. 1980)).

14) 일본에서는 도산법 내에서 債務辨濟強要行爲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83년 입법된 貸金業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금업자의 채무변제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채웅, 소비자파산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103-106면 참조.

IV. 清算型節次

1. 適用對象

개인의 도산절차로서 청산형절차와 채무조정형절차 양자를 인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형절차는 주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소비자채무자를 염두에 두고 입법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산형절차는 채무조정형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 채무자를 포함하여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채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 채무자를 한정하는 기준으로는 ① 채무자가 사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의 속성에 착안하는 방안과(독일의 예) ② 채무자의 사업활동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이나 채무액수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범위를 정하는 방식(미국의 13장절차) ③ 非職業的 債務가 과잉인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체의 속성도 감안하는 경우(프랑스) 등의 기준이 가능할 것이다.¹⁵⁾

2. 破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

우리나라 파산법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제132조) 파산관재인이 재단의 管理, 換價 및 기타 清算을 주도하게 된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서 절차비용의 상당부분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이므로 이를 생략할 여지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환가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에(예를 들자면 재산이 금전채권만인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자 자신에 의한 청산을 인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배당재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¹⁶⁾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환가·배당자체는 법원의 감독하에서 파산자 자신에게 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청산업무는 단순한 환가·배당만이 아니라 재산(적극·소극재산)의 조사·확정활동을 포

15) 자세한 내용은 최성근, 윤영신, 앞의 각주 3)의 보고서, 제4장 제1절 3. 참조.

16)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編, 倒産法制に關する改正検討課題(別冊NBL no.46) (1997), 81면 참조.

IV. 清算型節次

함한다. 따라서 만약 파산자 자신에 의한 청산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는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바, 차라리 현행의 관재인과는 다른, 개인의 도산처리에 어울리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입장에서는 自己管理를 원칙으로 하는 오스트리아에서도 환가는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법원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제190조3항), 독일에서도 受託者가 換價權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¹⁸⁾

3. 自由財產의 擴張

현행 파산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3항). 이는 파산은 포괄집행이라는 생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율 중 일부(민사소송법 제532조4호 내지 6호) 및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등의 압류금지채권(민사소송법 제579조)은 예외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파산절차는 우선 채무자의 구제수단이라는 기본적 이해를 한다면 파산법 독자의 자유재산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파산자의 가정보호를 통한 채무자생생의 촉진을 기할 수 있다. 특히 청산형절차에서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의 생활이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자유재산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금지의 근거와는 달리 채무자의 생생에 필요한가라는 점에 있어야 한다.¹⁹⁾

미국의 경우에도 절차개시 신청시 개인채무자는 일정한 종류와 한도의 재산을 지정하여 도산재단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새출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연방도산법상 자유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15,000달러 미만의 주거용의 부동산, 2,400달러 미만의 한 대의 자동차, 한 품목당 400달러 미만이고, 총가액이 8,000달러 미만의 가사용품, 감정적 가치를 가

17) 田頭章一, “個人破産・免責手續”, ジュリスト No.1134 (1998.6.1), 24면.

18) 이와 같은 논의는 일본에서 배당할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파산신청 전에 신청대리인 또는 채무자 자신이 재산을 처분하여 임의적으로 배당을 함으로써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얻는 관행을 명문화하고자 한 것이다. (深山卓也 등, “倒産法制に關する改正検討事項」に對する各界意見の概要(4)”, NBL No.650 (1998.10.1), 32면).

19) 田頭章一, 앞의 각주 17)의 논문, 25면.

진 물건, 채무자의 업무를 위한 도구나 장애연금, 양로연금 등 채무자의 생계 수단이 되는 재산 등이다(미국연방도산법 제522조(d)).²⁰⁾

영국에서는 자유재산의 범위에 ① 파산자 개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가족용품, 식료품 등뿐 아니라 ② 사업이나 직업상 파산자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구, 서적, 차량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제283조2항).²¹⁾²²⁾

4. 免責節次

(1) 破産節次와 免責節次의 一體化

1) 一體化論議

현행 파산법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파산폐지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종료한 후 아직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파산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파산절차가 종료한

20) 미국 연방도산법상 자유재산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제522(c)에 따라 자유재산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피부양자가 제출할 수 있다. 도산판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유재산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신청한대로 자유재산의 범위가 설정되게 된다. 대법원은 채권자 또는 도산판재인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자유재산신청이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자유재산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Taylor v. Freeland & kronz, 112 S. Ct.1644(1992)).

21) 영국에서도 파산재단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파산개시 당시 파산자가 권리를 가지는 모든 재산이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도산판재인이 당해재산의 취득사실을 안 때로부터 42일 이내에 통지를 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제307조 및 309조).

22) 일본에서는 새로이 자유재산에 추가할 재산의 후보로서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5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敷金반환청구권 및 生保해약반환금청구권, 1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원동기부자전차 등, 하나의 전화가입권 등을 예시하고, 그 외에도 각 채무자의 개성에 따른 생활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재산의 한도액의 미사용분의 합계액 더하기 일정금액(예를 들자면 3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재산(현금을 포함)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宮川知法, 앞의 각주 7)의 책, 253면). 여기서 敷金이란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 임대차는 대부분 월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우리의 전세보증금과 같이 거액이 아니고 대략 3개월부 월세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IV. 清算型節次

후에는 파산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또 면책결정의 효과가 소급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형식적 근거로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²³⁾ 그러나 이를 허용하게 되면 파산자의 새출발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채권자간 평등을 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절차 일체화의 논의가 등장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일체화되어 있어 별도의 면책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독일의 신도산법이나(제287조1항) 오스트리아에서는(제199조1항)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면책신청은 도산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보고기일(Berichtstermin)까지 하여야 하는데(제287조 1항).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개시결정공고에서 잔여채무면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야 한다(제30조4항).

개인의 청산형절차의 종국적 목적은 면책을 얻어 새출발을 하는 것이므로 면책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면책절차와 파산절차를 일체화하든가, 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면책을 원하는 자의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2) 財團不足으로 인한 破産廢止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절차로 일체화 하는 경우에는 재단부족으로 인한 同時 또는 異時破産廢止制度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파산법하에서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35조). 또한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5조). 현행 파산법하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진행되므로 파산을 폐지하여도 면책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파산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든지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파산폐지의 결정이

23) 최판 (三小) 平成二・三・二〇 (民集四四卷二号四一六頁). 이 판결에 관한 논의의 상세는 遠藤功, “破産解止後免責手續中の個別執行による不當利得の成否”, 判例タイムズ 830號 (1994), 356면 이하 참조.

있은 때에는 그 결정 확정 후라도 1월 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제339조). 그런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체화하게 되면 파산폐지제도를 둘 수 없고, 절차가 계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破産管財人 選任 문제

현행 파산법상으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제132조1항), 동시파산폐지제도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생략하고 면책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파산폐지제도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시 반드시 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게 된다. 이 문제는 특히 면책기간을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절차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생략하거나 또는 면책절차를 주관하는 것으로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독일의 수탁자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수탁자제도를 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절차비용이 필요하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독일의 新倒産法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는 관계로 재단부족을 이유로 도산절차폐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 경우에는 잔여채무면책절차가 아예 개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89조3항).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하여는 도산절차비용에 충당할 재산조차 가지지 않은, 가장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는 면책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²⁴⁾ 이러한 점은 즉시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2) 免責期間

잔여채무면책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구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면책허가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5년이 경과한 후 면책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

24) 김경욱, 앞의 각주 5)의 논문, 135면 참조.

IV. 清算型節次

에는 3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제297조1항 및 2항)). 더 나아가 소규모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2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제297조2항).²⁵⁾ 독일에서는 면책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도산법은 7장절차에서는 즉시면책을 인정하지만, 채무조정형절차인 13장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동안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면책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변제율 이상의 변제를 한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면책절차개시 확정 후 7년간의 급여 등 압류가능한 부분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지만(제199조2항), 3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고 50% 이상의 변제율을 달성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²⁶⁾

(3) 免責의 要件

면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요건으로서 고려가 필요한 점은 첫째, 면책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것인가 및 둘째, 일정 비율 이상의 변제를 면책의 요건으로 할 것인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모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채권자의 의무 중 가장 주된 것은 개별적 집행의 금지라고 할 수 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체화하고 일정한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이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 도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도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입법이

25)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적으로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다. 무담보파산채권이 2만 파운드 미만이고 신청 전 5년 이내에 채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약식관리증서(certificate for the summary administration of the bankrupt's estate)를 발급하는 간략한 절차에 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면책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면책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가 필요하다. 면책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만오천 파운드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형사파산 명령이 내려져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및 파산절차개시 이전 15년 이내에 파산을 한 경우이다.

26) 山本和彦, 앞의 각주6)의 논문, 388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양국의 도산법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신도산법 제295조, 오스트리아법 제120조). 독일 신도산법은 ① 기본적으로 7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한 수입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②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근로를 하여야 하고, 실업을 한 경우에도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근로의 기회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고 ③ 상속이나 중여로 취득한 재산의 2분의 1을 인도하여야 하고 ④ 주소와 근무지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며 ⑤ 수입이나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아야 하고 ⑥ 근로의 내용, 수입,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⑦ 채권자간의 평등을 위하여 채권자에 대한 모든 지급을 수탁자를 통하여만 이행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히 지급불능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의무도 추가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변제율에 관하여 독일 신도산법은 이를 면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은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에서는 3년이 경과하고 50%이상의 변제율을 달성하거나, 7년이 경과하고 10% 이상의 변제율을 달성할 것이 면책의 요건이다(제213조1항).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²⁷⁾

(4) 免責期間中の 監督

일정한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그 동안 채무자의 수입으로 변제를 하여야 하는 면책제도를택한다면 그 기간동안 절차를 관리할 기관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면책기간중의 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절차기관을 두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 등 면책기간 중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절차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는 '수탁자'라는 절차기관을 두어²⁸⁾ 채무자의 수입을 수령, 관리,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제292조).

절차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수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²⁹⁾ 수탁자의 보수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27) 최성근, 윤영신, 앞의 각주3)의 보고서, 제4장 제2절 2. 참조.

28) 독일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절차의 관리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관재인 대신 수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9) 독일 신도산법하에서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수탁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제288조) 법

IV. 清算型節次

검토가 필요하다.³⁰⁾ 또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일체화되면 현행법하에서는 동시파산폐지에 해당되어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지라도 면책절차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파산폐지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관재인선임을 생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새로이 면책에 관한 절차를 관리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免責의 決定

면책절차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면책요건의 심사 없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간이면책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¹⁾

독일의 경우에는 면책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어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면책절차를 개시한다(제290조). 또한 7년의 성실행동기간 중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도산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잔여채무면책을 불허한다(제296조). 미국 연방도산법은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27조(a)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도산관리인 또는 연방관리위원이 면책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27조(c)항). 법조문의 형식에 의하면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없이도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적극적 역할은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불허가는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게된다. 이 경우 이의에 대한 입장책임은 이의를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도산규칙 제4005조).³²⁾

원이 이 추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0) 山本和彦, 消費者倒産立法の論点(下), 判例タイムス No.931 (1997.4.15), 48면 참조.

31) 田頭章一, 앞의 각주17)의 논문, 26면.

32) 미국에서는 7장절차의 신청으로부터 대개 20일 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가 소집되고, 면책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으면 제1회 채권자집회 소집일로부터 60일 정도가 경과하면 면책이 허가된다(Consumer Bankruptcy Law and Practice,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1996), 76면 및 341면 참조.)

(6) 非免責債權

현행 파산법상 면책의 효과는 별제권이나 재단채권에는 미치지 않지만,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非免責債權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파산법상 비면책채권은 i) 조세 ii)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채권 iii) 약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iv) 고용인의 최후 6월간 급료 v) 고용인의 임차금, 신원보증금반환청구권 vi) 파산자가 약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다(제349조).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조세채권인데, 독일 및 오스트리아, 영국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독일 신도산법 제302조, 오스트리아 도산법 제215조, 영국 도산법 제281조). 반면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는 일정한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23조(a)(1)).

5. 其 他

(1) 破産者에 대한 制裁

미국연방도산법은 면책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면책채무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25조). 이는 채무자를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제52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채무자의 새출발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연방도산법상의 채무자라는 것, 또는 채무자였던 것, 도산절차개시 전 또는 면책허부의 전에 지급불능상태에 있었던 것, 또는 면책대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면허, 허가, 인가, 특히 기타 유사한 授權을 취소, 정지 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제525조(a)). 私人이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것보다는 범위가 좁아서 고용의 경우에만 차별이 금지된다(제525조(b)).

우리나라에서는 파산법 자체에서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법에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의 진정한 새출발을 돋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는 직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IV. 清算型節次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이익 규정들은 삭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³³⁾

특히 즉시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면책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파산자의 지위에서 일정기간동안 벗어날 수 없으므로 더구나 이러한 징계주의적 접근방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2) 破產者에 대한 監守制度의 폐지

파산자의 監守 및 파산선고 전의 拘引 또는 監守制度는 운용방식에 따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할 것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監置를 명하는 경우를 오히려 늘리고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개정안에 의하면 '변제명령위반'의 경우와 '재산명시절차 중 일정한 경우'에 감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3) 扶助料의 紿與

부조료의 급여를(제184조) 현행법과 같이 제1회 채권자집회의 필요적 결의사항으로 둘 것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적 부조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서 부조료를 지급하는 제도 자체는 남겨 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여도, 부조료 급여의 필요성 및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3) 즉시면책이 아니라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기간중의 성실행동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므로 파산의 불이익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V. 債務調整型節次

1. 適用對象

청산형절차와 별도의 채무조정형절차를 두는 경우에는 이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13장절차의 이용자격을 한정하여 정기적·안정적 수입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채무조정형절차 이용자격과 간이도산절차의 이용자격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기적 수입의 여부를 불문하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영위하는 개인은 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의 성패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장래의 수입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래의 정기적 수입이 없는 자의 채무조정형절차개시의 신청은 무익하게 절차의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조정형절차의 이용자격은 소비자채무자 중에서 정기적 수입이 있는자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2. 申請權者

채무조정형절차의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도 13장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채무자로 한정된다. 영국에서도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민사재판생은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판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한정된다. 채무조정형절차는 변제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신청권자를 채무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형절차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채권자가 다른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조정형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채권자가 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06

V. 債務調整型節次

조). 미국에서도 채무자는 언제나 7장절차를 13장절차로 이행시킬 수 있다(제706조(a)).

3. 節次開始要件

우선 채무자의 자산상태에 관한 요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파산의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요건이지만 채무조정형절차에서는 신청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화의법에서도 파산의 원인인 사전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를 절차개시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과도(화의법 제12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채무의 변제에 의하여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금전의 차입, 의사에 반하는 퇴직, 기타 생활수준의 현저한 저하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개시를 인정하자는 안도 있고,³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생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를 개시요건으로 하자는 안도 있다.³⁵⁾ 청산형절차와 채무조정형절차를 일원화된 단계적인 절차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원화된 도산절차의 개시요건을 시간적으로 더 앞선 채무조정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급불능이 발생한 경우보다 더 앞선 시점, 예를 들자면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형 절차의 적용대상을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개시요건을 달리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형절차의 적용대상을 정기적 수입이 있는 소비자채무자로 한정한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채무자는 청산형절차의 적용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므로 채무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채권자의 신청의 경우를 나누어 절차개시요건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 이는 일본의 消費者破産研究會에서 작성한「定期的かつ安定した收入を得る見込みのある誠實な債務者の債務の調整に關する法律の試案」(1983)의 제안이다(ジュリスト 801호 (1983), 13면 이하에 수록됨). 이하 調整法試案이라고 略한다.

35) 五十部豊久교수가 작성한「消費者和議手續試案」에서 제안된 것이다(都立法學 27卷2號 (1986)에 수록됨). 이하 和議法試案이라고 略한다.

그 외에 현행 화의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화의법 제18조 및 제19조), 이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형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요건을 규정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채무자의 부당한 지연의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위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을 거쳐 사건을 7장절차로 이행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제1307조(c)항).

또한 프랑스법에서는 채무자의 성실성(bonne foi)를 절차개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이를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의 단계에서 문제 삼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삼는다면 어떠한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 변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도 기각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³⁶⁾

4. 開始의 效果

채무조정형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중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앞에서 고찰한 권리행사 제한의 범위라든가 시기의 문제(자동적 중지의 문제)에 대한 검토 외에도³⁷⁾ 채권자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도 중지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는 13장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공동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civil action)을 제기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중지된다(제1301조). 이러한 공동채무자 등에 대한 訴提起中止(codebtor stay)는 ① 채무가 소비자채무이고 ② 공동채무자 등이 신용제공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동채무자에 대한 소제기 중지는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각되거나 또는 7장이나 11장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이와 같은 원칙의 예외로서 다음 세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통지와 심문절차를 거쳐서 공동채무자에 대한 소제기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제1301조(c)). ① 13장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아닌 공동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대가를 수취한 경우³⁸⁾ ② 채무자

36) 山本和彦, “消費者倒産立法の論点(上)”, 判例タイムズ No.929 (1997.4.1), 51면 참조.

37) 위의 III.2 참조.

38) 예를 들자면 D가 콘택트렌즈를 사기 위하여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D의母인

V. 債務調整型節次

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부분 ③ 중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경우이다.³⁹⁾

5. 債務者의 재산에 대한 管理處分權 및 監督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하지만, 회의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기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다만 회의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에 대한 감독(화의법 제32조) 및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화의법 제36조) 등을 하고 있다. 채무조정형절차에서는 과연 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인가, 그 권한범위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 13장절차에서는 관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제1302조(a))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연방관리위원(United States trustee)은 그 지역 내의 모든 13장절차사건의 관재인이 되는 상임관재인(standing trustee)을 지명한다. 관재인은 변제계획에 따른 지급을 받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권한을 갖는다(제1302조(b) 및 (c)). 반면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명확하게 자기관리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관재인은 선임되지 않고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의 관리권을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86조). 다만 일정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과 채권자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이 박탈되어 관재인이 선임되도록 하고 있다.⁴⁰⁾

일단 관재인을 선임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관재인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채무조정형절차에서 관재인은 업무의 많은 부분이 변제계획에 따른

M이 공동발행인으로서 어음에 서명한 경우, D가 아니라 M이 13장절차를 신청하였다면 제1301조(c)항(1)호에 따라 D에 대한 소제기정지는 해제될 것이고, 따라서 C는 D에게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Epstein, Bankruptcy and Other Debtor-Creditor Laws in a Nutshell (5th ed. 1995), 369면).

39) ②를 이유로 한 소제기증지의 해제신청은 채무자나 공동채무자가 20일 이내에 서면의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인용된 것으로 취급한다(제1301조(d)). 제소기한의 진행은 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108조(c)에 따라 채권자는 소제기정지가 종료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주법상의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Epstein, 앞의 각주38)의 책, 370면.

40) 山本和彥, 앞의 각주36)의 논문, 54면.

지급을 채권자에게 하도록 하는 사무적인 것이고, 조사나 감독권한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의 저렴화 측면에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의 관재인직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한다.

6. 債權의 申告 · 調査 · 確定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채권자 및 채권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채권의 조사·확정을 엄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도산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절차의 간이·신속화가 저해된다는 점이다. 현행 파산법에서는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및 그 기일에서의 이의제출기회부여와 같이 엄격한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규정하고 이 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채권표기재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⁴¹⁾ 화의법에서는 파산법과 달리 채권확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화의관재인이 정리위원과 공동으로 신고된 화의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시킬 것인가 및 어떠한 금액에 관하여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한다(화의법 제51조 및 제52조). 화의절차상의 채권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소비자채무자의 채무조정형절차와 청산형절차를 일원화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형절차의 실패는 정지되었던 청산형절차의 속행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각 절차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다른 절차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에 관한 규정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채무자의 채무조정형절차에서도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두고 이에 대하여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프랑스법은 종래에는 채권의 신고의무와 법원에 의한 조사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와 채권확정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

41) 현행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하여 그 기일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확정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채권을 채권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파산법 제215조), 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자도 이의를 전술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자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파산법 제259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어느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외에서 별개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존부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V. 債務調整型節次

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95년 개정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여 不申告에 의한 失權 및 채권확정의 효과를 절차 내로 한정하고 기판력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⁴²⁾

독일 및 오스트리아법은 채권조사기일을 두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법은 자기관리가 원칙이어서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관계로 채무자가 인부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이상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제188조). 독일은 서면에 의한 조사라는 간이한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제312조).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은 도산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성립하게 되고, 이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794조1항1호에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화의(vollstreckbarer Vergleich)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308조(1)항). 즉 변제계획이 채무명의가 된다.⁴³⁾

미국에서는 채권의 조사 및 확정은 7장과 13장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채권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제501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채권은 인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문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채권의 존부와 금액에 대해 결정한다(제502조).

절차간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확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화 및 저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독일과 같이 서면에 의한 절차를 인정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⁴⁴⁾

7. 辨濟計劃

(1) 辨濟計劃의 提出時期

현행 화의법에서는 신청시 화의조건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화의법 제13조). 이 점이 화의의 신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소비자의 채무조정형절차에서도 계획의 제출시기를 신청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절차 중에 작성·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42) 山本和彦, 앞의 각주36)의 논문, 42면.

43) R. Schmidt-Räntsche, MDR 1994(Fn. 40), S. 326 (김경옥, 앞의 각주 5)의 논문, 130면에서 재인용).

44) 山本和彦, 앞의 각주 36)의 논문, 43면 참조.

미국 13장절차에서 채무자는 절차 중에 변제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적시에 변제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건을 7장절차로 이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07조(c)(3)). 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법원은 통지와 심문절차를 거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도산규칙 제3015(b)). 독일에서도 변제계획을 채무조정형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채무조정형절차의 신청여부를 검토하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제출을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 신청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신청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신청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으로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의 종결 또는 이행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計劃의 提案과 同意 및 認可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형절차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변제계획을 제안할 것인가 및 계획의 승인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각국의 입법을 계획의 제안자와 승인권자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면 ① 채무자제안, 채권자동의(일본의 화의절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변제계획절차, 영국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 ② 제3자기관의 제안·채권자동의 - 관재인 또는 조정위원회 1차적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채택여부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형(일본의 회사생생절차와 동일한 유형), ③ 채무자제안·채권자동의불요 - 채무자가 제안하지만 채택 여부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는 형(미국의 13장 절차), ④ 제3자기관의 제안·채권자동의불요 - 법원이나 관재인 등이 1차적으로 변제계획 작성하고 법원의 결정 등으로 채택여부 결정하는 형(프랑스의 민사재판생생절차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⁴⁵⁾

45) 山本和彦, 앞의 각주 36)의 논문, 44면 참조.

V. 債務調整型節次

1) 美 國

미국의 13장 절차에서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제1321조). 채권자의 법정다수결에 의한 가결은 요구되지 않고 법원이 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2) 獨 逸

독일에서는 채무자는 간이도산절차 개시신청의 경우(제311조) 또는 그 후 지체없이 변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05조). 원칙적으로 계획의 승인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정 요건하에서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변제계획의 송달은 받은 채권자는 1개월의 법정기간 내에 동의할 것인가 또는 이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307조제1항). 이 기간 내에 채권자의 태도결정이 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한다(제307조제2항). 또한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제309조1항). 즉, 지정된 채권자의 과반수가 변제계획에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한 채권자의 채권총액이 지정된 채권자의 채권총액의 과반수를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를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동의의 대체는 소수채권자의 이익보호의 견지에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제309조2항). 하나는 채권자의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도산절차 및 면책절차에 의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해된 경우이다.

독일에서는 변제계획의 승인에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일정한 요건하에서 동의의 간주 및 동의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미국 13장 절차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동의의 대체를 위해서는 채권자 및 채권총액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더 부가됨으로써 미국의 경우보다 좀 더 채권자의 의사가 존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英 國

영국의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는 채무자가 조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

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諸外國의 입법태도 중 가장 합의에 충실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안에는 倒産實務家 중 조정위원(nominee)이 될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53조제2항). 이는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 신청 전에 조정위원 예정자를 선임하여 그의 조력을 받아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조정위원은 조정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정지하는 임시명령의 취소를 신청함으로써(제256조제6항) 절차를 기각시킬 수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권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정위원이 조정안 작성단계에서부터 조언을 하기 때문에 임시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조정위원이라는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당사자가 비용의 부담이 있는 법적 절차를 무익하게 밟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명령을 연장하여(제256조5항) 채권자집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출석하여(또는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채권총액의 4분의 3이 조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이 승인된다(규칙 제5.18조(1)항).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조정안의 수정에 동의하는 한에서는 조정안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제258조4항 및 5항). 영국의 경우는 가장 당사자간의 합의의 성격이 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직권성이 매우 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의 작성에서 법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변제의 유예나 移延과 이율의 인하, 변제의 원금충당 등을 할 수 있으나, 주택관계채무를 제외하고는 채무원금의 감면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⁴⁶⁾ 프랑스의 민사재판생생절차는 이러한 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생생절차가 임의성을 가지고 있는 절차인 것에 대비된다. 오히려 강제성이라는 면에서는 청산형절차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5) 示唆點

채무조정형절차의 성공여부는 채무자의 자발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한

46) 山本和彥, 앞의 각주 4)의 논문, 129면.

V. 債務調整型節次

다면 계획의 작성은 채무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여기서 제3자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도산실무자를 계획안 작성단계에서부터 관여 시킴으로써 계획안 작성에 조력을 하고 계획안의 실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지만, 이는 비용의 측면 및 도산실무자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설의 管財人職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력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무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은 채권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는 반드시 집회에 의하여 할 필요없이 서면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은 경우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비동의를 동의로 대체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辨濟計劃의 內容에 대한 制限

1) 計劃의 대상인 債權

현행 화의법에서는 담보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동의가 없으면 화의에 의해 권리의 변경을 수 없는바, 이것이 화의성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소비자 채무조정형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의 권리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미국 연방도산법 제13장절차에서는 제507조에 따라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1322조(a)(2)).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변경시킨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권리가 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제 1325조(a)(5)(A)).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계획이 인가될 수 있다. 그 요건은 ① 채권자가 담보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제안된 변제액의 現在價值가 담보물의 가액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인도하는 경우이다(제1325(a)(5)).⁴⁷⁾

영국에서는 담보채권자와 우선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조정안은 승인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58조(4)항 및 (5)항).

2) 計劃의 認可

계획안의 채택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론 인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채권자의 보호차원에서 계획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영국에서는 계획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결정한다. 조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법원의 인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고,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되면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제260조(5)항).⁴⁸⁾ 그러나 효력 발생에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승인된 조정안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채무자,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조정위원,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의 수탁자 또는 공적관리인은 ① 조정안이 불공정하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② 조정안 또는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62조(1)항 및 (2)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기하여 채권자집회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채권자집회를 다시 개최하여 수정된 조정안을 검토하거나 원래의 조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동조 (4)항)

미국 13장절차에서 계획의 채택여부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를 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무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47) 다만 채무자의 주된 주거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급을 하고 있다(제1322(b)(2)). 이는 주택금융업자에 의한 금융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지만,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위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원래의 계약대로 이행하여야 한다(Blum, Bankruptcy and Debtor/Creditor (1993), 452면)

48) 채권자집회의 의장은 채권자집회의 결과를 4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59조(1), 규칙 제5.2조(2)).

V. 債務調整型節次

전액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채권자에게 자의적으로 지급을 더 많이 해서는 안된다. 변제계획은 모든 무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거나 채권자의組를 구분하여 각組안에서는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제1322조(а)(3), 제1322조(б)(4)). ② 계획이 성실(good faith)하게 제안된 것이어야 한다(제1325조(а)(3)).⁴⁹⁾ ③ 계획은 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담보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가 7장절차에 의하였다면 배당받았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제1325(а)(4))(清算價值保障).⁵⁰⁾ ④ 이러한 요건들과 함께 제1325조(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모든 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계획이든지 또는 채무자의 '處分可能所得'(disposable income)을 3년간 계획에 따른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부양이나 양육,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제1325(б)(2)) ⑤ 또한 계획의 실행가능성 여부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제1325(а)(6)).

독일에서는 채권자의 법정다수에 의한 동의가 있는가 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동의가 간주되거나 동의의 대체가 있는 것인가만이 문제되고, 그 외에 계획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이다.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합의라는 성격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의의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비교해서 불공평하게 변제받거나 또는 변제계획에 의해 일반도산절차에서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제309조(1)항). 오스트리아법은 불인가 사유로서 변제계획의 부적법, 변제계획절차나 투표의 위법, 일부채권자의 우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⁵¹⁾ 또한 변제율에 대한 기재도 필요하다.

49) 법원은 성실성 여부를 결정할 때 채무자가 계획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많이 참고한다(Epstein, 앞의 각주 38)의 책, 373면).

50) 실제로 7장절차에서 무담보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Epstein, 앞의 각주 38)의 책, 374면)

51) 앞의 각주 34)의 調整法試案(제16조2항)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반, 계획의 실행 불능, 채권자평등원칙의 위반을 들고 있다. 앞의 각주 35)의 和議法試案은 인가요건으로서 변제계획·절차의 합법성, 계획의 공정·형평·실행가능성, 결의방법의 공평을 들고 있고(제36조1항), 불인가요건으로서 신청인의 소재불명 및 詐欺破産罪에 해당하는

각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보면 채권자간의 평등이 침해되거나 채권자들의 동의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대개 공통적으로 불인가의 요건으로 하든 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든 계획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요건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채무자의 성실성을 요건으로 할 것인가, 청산가치보장, 계획의 실행가능성 여부, 변제율 내지는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중 변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4) 計劃期間

다음으로 변제계획 기간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13장절차에서 변제계획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년이 한도이다.(제1322(c)). 영국에서는 임의적 채무조정의 기간에 대하여 법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스트리아법은 변제율을 기초로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기간을 요하지만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프랑스법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⁵²⁾

8. 辨濟計劃의 效力

(1) 免責

1) 免責의 效力發生時期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변경의 효과가 문제된다. 즉, ① 변제계획이 확정될 때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진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② 변제계획의 이행완료시점에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⁵³⁾

행위를 들고 있다.

52) 단, 장기의 차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채무의 잔존차입기간의 반은 계획에 포함된다.

53) 이 시기는 채권자의 손금처리가 가능한 시점에도 관계가 있다(山本和彦, 앞의 각주 30)의 논문, 45면.

V. 債務調整型節次

현행 화의법에 의하면 화의의 효력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한다(제58조).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된다고 해석하고 있다.⁵⁴⁾ 즉 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면책의 효과 발생시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의 효과로서 당연히 계획에 의한 면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⁵⁵⁾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i) 계획의 이행이 완수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의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ii) 면책은 실효되어 원래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⁵⁶⁾ 계획의 확정시에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획의 불이행시에도 면책의 효력을 유지한다면 계획이행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⁵⁷⁾

반면 미국 연방도산법 13장절차는 후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⁵⁸⁾ 계획에 따른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법원은 즉시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제1328조(a)).⁵⁹⁾

2) 辨濟計劃不履行時의 免責與否

변제계획의 확정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획의 불이행시에는 실효한다고 보는 경우(위의 ①ii))나 변제계획 완료시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위의 ②)에는 변제계획이 완료되지 못하면 전혀 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면책을 인정할

54) 화의사전실무(개정판), 법원행정처 (1998), 157면.

55) 木川裕一郎, 앞의 각주 5)의 논문, 275면.

56)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編, 앞의 각주 16)의 책, 74면 참조.

57) 프랑스에서는 채권자가 계획 전의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山本和彦, 앞의 각주 4)의 논문, 131면).

58) 조정법시안은 채무자가 계획을 완수하였음을 법원에 신고하면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잔여채무가 자동적으로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및 제22조).

59) 13장절차에서 면책의 효과는 변제계획의 이행완료시 발생하는데, 면책의 범위에서는 7장절차와 차이가 있다. 7장절차에서는 넓은 범위의 비면책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제 523(a)), 13장절차에서의 7장에서보다 좁은 범위에서 비면책채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제1328조(a)항). 이는 청산형절차와 채무조정형절차를 복수의 병렬적 절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3장절차로의 유인책 중의 하나이다. 양절차를 일원화된 단계적 절차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의 범위를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⁶⁰⁾ 미국 연방도산법 13장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제1328조(b)). 이를 채무자의 곤경(hardship)에 따른 면책이라고 한다. 그 요건은 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자유로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② 계획에 따라 지급된 재산의 가액이 채권자가 7장절차에 의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가액을 초과하였으며 ③ 계획의 변경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일 것의 세 가지이다.⁶¹⁾

(2) 效力의 範圍

현행 화의법상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은 화의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또한 그 전원에 대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불문하고 발생한다(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1항). 화의조건에 반대하였는가의 여부, 채권신고 여부, 채무명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화의채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화의의 효력을 받는다.⁶²⁾ 변제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인바, 이러한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즉 채무자가 제출한 명부에 기재가 없고, 채권의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도 계획의 효력대상인가의 문제이다.

절차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과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의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에서는 전자의 입장을택하고 있다. 채권자집회에서 실제로 출석하여 결의를 하였는가를 불문하고 통지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인정된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다(제260조2항). 그러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자, 의결권행사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받아 채권자집회의 의장이 의결권행사를 거절한 채권자, 후순위채권자와 같이 조정안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자 등 의결권을 가지지 않았던 채권자는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

60) 변제계획의 확정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획의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는 경우(위의 ① i))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61) 채무자의 곤경에 따른 면책의 경우에는 이행완료후의 면책과는 달리 제523조(a)의 비면책채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328(c)). 따라서 7장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지 못한다.

62) 앞의 각주 54)의 책, 158면.

V. 債務調整型節次

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채권이 채무자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변제계획의 완성시에도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의 효력에 구속을 받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308조3항).⁶³⁾

반면 미국 연방도산법 13장절차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인가된 변제계획은 채권이 계획에 기재되었는가 여부 및 채권자가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였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제 1327조(a)).⁶⁴⁾

(3) 計劃의 履行監督

현행 화의법하에서는 화의인가결정으로 화의절차는 종료되므로 화의관재인의 직무권한도 소멸한다. 다만 이행확보방법으로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채무자의 資金收支 상황 기타 화의조건의 이행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원이 정한 사항을 매 반기별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2조의2). 화의조건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화의취소를 함으로써 화의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화의인가결정시 주문에 화의채무자의 보고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⁶⁵⁾ 소비자채무자조정절차에서도 변제계획의 인가로 절차를 종료시키고 별도의 감독기관을 두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감독기관을 두어 이행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연방도산법 13장절차에서는 도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장래수익의 일정부분을 도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 도산관재인이 관리하도록 한다. 영국의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에서도 감독위원(supervisor)을 선임하여⁶⁶⁾ 승인을 얻은 채무조정계획의 이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채무자의 자산은 감독위원에게 인도되어야 하고(규칙 제5.2조(1)항) 감독위원은 조정계획과 관련된 행위와 거래의 회계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선임으로부터 매 12

63) 일본 화의법시안 제39조에서도 채무자가 고의로 은닉한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하여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 외로 하고 있다.

64) 일본의 조정법시안에서도 조정계획은 신청인 및 모든 채권자를 구속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65) 화의사건실무(개정판), 법원행정처 (1998), 170면.

66) 많은 경우 조정위원을 감독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월에 한 번 이상 수입과 지출의 개요와 조정안의 진행과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과 채무자, 조정안의 구속을 받는 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제5.26조(1)항 및 (2)항).

별도의 변제계획의 이행의 담보를 위한 감독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감독의 정도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辨濟計劃의 變更 및 取消

변제계획이 동의 또는 인가로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사정이 변경되어 당해 계획에 따른 변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연방도산법 13장절차에서는 인가후 계획에 의한 변제완료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자, 도산관재인, 또는 무담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제1329조(a)항). 영국의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승인된 조정계획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감독위원 또는 채권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제276조). 조정계획의 변경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계획상에 감독위원 또는 채권자위원회가 채무자의 변제의 시기 및 액수의 변경 등 조정계획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승인한 채권자집회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조정안의 변경요청에 대해 결의할 수 있다.⁶⁷⁾ 오스트리아법(제198조)은 “수입상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계획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인정한다.⁶⁸⁾

또한 변제계획이 확정된 후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례가 대개 일치하고 있다. 미국연방도산법 13장에 의하면 계획의 인가가 사기에 의하여 얻어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330조(a)).

67) 변제계획의 변경에도 채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래 변제계획의 확정에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는가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이다.

68) 조정법시안(제19조) 및 화의법시안(제43조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획 변경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VI. 結 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도산법을 새로이 입법하는 경우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약간의 검토를 하였다. 모든 쟁점을 망라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집적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도산법 입법시 기초적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형평과 효율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소비자도산법의 도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99-04
消費者倒産法 立法時의 檢討課題

1999년 12월 24일 印刷
1999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 (579)0090, 0308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값 5,500 원

- 本院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ISBN 89-8323-118-1 93360

